

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『중소기업육성자금』 응자대상 업체의 대출 취급은행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『금융기관의 정의』를 “시금고”에서 “은행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”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출은행 확대의 토대를 마련함(안 제2조제2호).
- 나.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과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의한 대출규정을 마련함(안 제4조제4항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관련 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03. 2. 7 ~ 2. 27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은행 확대 건의(기업은행, 안산상공회의소)
- 현행 조례(전문)

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금융기관”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, 동조제2항단서, 동조제3항 및 동조제3항제2호중 “금융기관”을 “시금고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금융기관은”을 “시금고는”으로 하며,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,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융자시 권리과 의무에 관한 사항
2.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
3. 대출절차,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

제12조중 “금융기관”을 “대출받은 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부서		기업지원센터
입 안 자	소 장	기업지원센터소장 최 원 용
	담 당	기업지원담당 김 용 배
	담 당 자	김 경 림 (행정 2841)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 1. (생략) 2. “금융기관”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시장과 시금고 계약을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 3. ~ 4.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“금융기관”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. 3. ~ 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(이하 “예치금”이라 한다)으로 예탁하여 관리 · 운용한다. ②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율 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 3. ~ 5. (생략) <u>(신설)</u>	제4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시금고 ② 시금고는 ③ 시금고 1. (현행과 같음) 2. 시금고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,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융자시 권리과 의무에 관한 사항 2.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율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3. 대출절차,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.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
제12조(변경사항 통보) 기금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, 대표자, 기타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	제12조(변경사항통보) 대출받은 금융기관